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510 호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안내 공고

우리 구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직권취소 영업소

연번	상 호 명	소 재 지
1	한분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2길 2 (연희동)
2	GS25 홍은동일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1, 101동 1층 (홍은동)
3	두산슈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5번지 1호 (배꽃길 44-1)
4	강원상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35번지 4호
5	훼미리마트 모래내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74번지 28호
6	강주상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41 (홍은동)
7	홍은슈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31 (홍은동,172-19)
8	코사마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58 (홍제동,1층)
9	M할인마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32번지 27호
10	동네슈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번지 53호
11	금성설비공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13번지 81호
12	믿음슈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7번지 9호
13	상호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5번지 4호
14	미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27-1 (홍은동)
15	제일지물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9길 20 (홍제동)
16	제일지물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43-1 (홍제동)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22. 11. 25. ~ 12. 2.

나. 접수기간 : 2022. 12. 5. ~ 12. 12.

다. 신청대상 : 위 직권취소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라. 신 청 처 : 서대문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바. 지정방법

1) 신청 기간 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담배판매인서부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결정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3)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아.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330-1924)로 문의